

공포번호	여성가족부령 제 호
공 포 일	2021. 10. 30.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1. 9.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9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0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10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소관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며,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직급에 복수직렬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9. 0. ~ 9.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여성정책”을 각각 “양성평등정책”으로 한다.

제6조제6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제7조제9항제9호 중 “가출 등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청소년상담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위기청소년통합지원시스템 구축·관리

제7조제1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맞 청소년”을 “맞”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지원 및 복지자금 대여”를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14의2. 양육비 채무 불이행 관련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별표 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 다음에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

사보·전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7”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전산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7”를 삭제하며, 행정서기 “7”을 “4”로 하고, 행정서기 4 다음에 “행정서기·사회복지서기·전산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 또는 사서서기 4”를 신설하며, “행정서기·사회복지서기·전산서기·시설서기 또는 공업서기 1”를 삭제한다.

별표 2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 다음에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전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7”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전산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7”를 삭제하며, 행정서기 “7”을 “4”로 하고, 행정서기 4 다음에 “행정서기·사회복지서기·전산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 또는 사서서기 4”를 신설하며, “행정서기·사회복지서기·전산서기·시설서기 또는 공업서기 1”를 삭제한다.

여성가족부령 제132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1년 10월 30일”을 “2023년 10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여성정책국) ①·② (생략)	제6조(여성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여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여성정책</u> 기본계획의 수립	2. <u>양성평등정책</u> -----
3. <u>여성정책</u>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3. <u>양성평등정책</u> ----- -----
4. ~ 22. (생략)	4. ~ 22.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u>여성창업자금의 관리·운영</u> <u><신 설></u>	<u><삭 제></u> 10. <u>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운영</u>
제7조(청소년가족정책실) ① ~ ⑧ (생략)	제7조(청소년가족정책실)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청소년자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u>가출 등 청소년에 대한 보호</u>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u>가정 밖 청소년 등</u> ----- -----

10. ~ 13. (생략)	10. ~ 13. (현행과 같음)
14. <u>청소년상담센터</u> 등 청소년 상담·구조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도·지원	14. <u>청소년상담복지센터</u> ----- -----
15. ~ 17. (생략)	15. ~ 17. (현행과 같음)
<u><신 설></u>	18. <u>위기청소년통합지원시스템</u> <u>구축·관리</u>
⑩ ~ ⑫ (생략)	⑩ ~ ⑫ (현행과 같음)
⑬ 가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 -----.
1. ~ 3. 삭제 <u><신 설></u>	3의2. <u>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u>
4. 미혼모 및 <u>청소년</u> 한부모의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4. ----- 및 ----- -----
5. ~ 10. (생략)	5. ~ 10. (현행과 같음)
11. 한부모가족의 고용연계 <u>지원 및 복지자금 대여</u>	11. ----- <u>지원</u>
12. ~ 14. (생략)	12. ~ 14. (현행과 같음)
<u><신 설></u>	14의2. <u>양육비 채무 불이행 관련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u>
15. ~ 23. (생략)	15. ~ 23. (현행과 같음)
⑭·⑮ (생략)	⑭·⑮ (현행과 같음)
여성가족부령 제132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	여성가족부령 제132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

직	직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은 <u>2021년 10월 30일까지</u>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 ----- ----- <u>2023년 10월 30일</u>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여성가족부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u>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전산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u>			<u><신 설></u>		<u>17</u>		+17
<u>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전산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u>			<u>17</u>	<u><삭 제></u>			-17
행정서기			<u>7</u>	<u>4</u>			-3
<u>행정서기 · 사회복지서기 · 전산서기 · 시설서기 · 공업서기 또는 사서서기</u>			<u><신 설></u>		<u>4</u>		+4
<u>행정서기 · 사회복지서기 · 전산서기 · 시설서기 또는 공업서기</u>			<u>1</u>	<u><삭 제></u>			-1
	.	.	.	.	.		
	.	.	.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여성가족부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u>			
<u>전산주사보·시설주사보·</u>	<u><신 설></u>	<u>17</u>	+17
<u>공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u>			
<u>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u>			
<u>전산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u>	<u>17</u>	<u><삭 제></u>	-17
<u>공업주사보</u>			
행정서기	<u>7</u>	<u>4</u>	-3
<u>행정서기·사회복지서기·전산</u>			
<u>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 또는</u>	<u><신 설></u>	<u>4</u>	+4
<u>사서서기</u>			
<u>행정서기·사회복지서기·전산</u>			
<u>서기·시설서기 또는 공업서기</u>	<u>1</u>	<u><삭 제></u>	-1
·	·	·	
·	·	·	